

## 클레임 안내

정전이 계속되는 동안 물품 훼손으로 손실을 입으셨으면, Con Edison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정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 배상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죄송합니다. Con Edison에서는 폭풍우로 인한 정전 때문에 발생한 피해 부분은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거주자 고객:

- 귀하는 냉장을 못하여 발생한 식품의 훼손으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해 최고 \$450 한도까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총액 \$200까지의 식품 클레임에는 항목별 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총액 \$200를 초과하는 식품 클레임에는 반드시 항목별 목록과 피해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등록기 테이프, 상점이나 신용 카드 영수증, 취소된 수표, 또는 훼손된 품목의 사진들).
- 또한, 냉장을 하지 못해서 훼손된 처방 의약품에 대한 실질적 손실에 대해서도 클레임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반드시 항목별 목록과 피해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식별해 줄 수 있는 약국 처방 라벨 또는 약국 영수증).
- 저희는 또한 Con Edison이 처방 의약품의 손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훼손된 식품에 대한 최대 한도액 \$450에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클레임은 반드시 정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은 식품과 의약품에 한하며 Con Edison의 전기 요금 산정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 모터, 장비, 집기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 부분은 전기 요금 산정표에 따른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클레임 양식](#) (이 양식을 읽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고객:

- 귀하는 냉장을 못하여 발생한 부패성 상품의 훼손으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해 최고 \$9,000 한도까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클레임에는 반드시 항목별 목록과 피해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클레임은 반드시 정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상은 부패성 상품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 모터, 장비, 집기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 부분은 전기 요금 산정표에 따른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클레임 양식](#) (이 양식을 읽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모든 클레임 건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클레임의 인정 및 청구금액의 지불 여부는 정전에 관한 사실 및 정황, 그리고 발생한 피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클레임은, 24시간내에 12시간 이상 계속해서 현지 배전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결과로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이 고려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Con Edison에서는 폭풍우, 홍수, 파괴행위, 파업, 화재와 같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제 조건이나 또는 당사의 운영과 관계 없는 사고 때문에 야기된 정전의 결과인 피해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은 [Con Edison의 전기 요금 산정표 \(Electric Rate Schedule\)](#)에 따라 실시됩니다.